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467
----------	------

제출일자 : 2024. 3. 11

제 출 자 : 달성군수



1. 제안이유

여성문화복지센터 이용료 감면 대상을 다자녀가정 및 병역명문가로 범위를 확대하여 여성문화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12조의 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기준 명료화
- 안) [별표 1] 장기등록 이용회원에 대한 이용료 감면 내용 삭제
- 안) [별표 3] 이용료 등의 감면 항목 중 다자녀가정 이용료 감면 범위 확대
(3자녀 이상 가정 → 2자녀 이상 가정)
- 안) [별표 3] 병역명문가에 대한 이용료 감면 내용 신설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1)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2) 「대구광역시 달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대한 조례」 제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 (2) 입법예고(2024. 2. 7. ~ 2. 27.) 결과 : 의견 없음
-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5)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6) 부서합의 : 해당사항 없음
- (7)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미첨부 사유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군수는 사용 시기 및 상황에 따른 시설 및 그 부속설비 등의 사용 효율성의 증대 등을 위하여 그 사용료를 별표 1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할 때 수영장 이용료 및 헬스장 이용료를 별표 3의 구분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항목에 대하여 중복적용을 아니하며 감면율이 큰 항목을 적용한다.

④ 전항들에 따라 시설 및 그 부속설비 등의 사용료나 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액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용허가나 이용을 신청하는 때 사용료나 이용료의 면제 또는 감액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신청서에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⑤ 동일 단체 소속 30명 이상의 이용자가 함께 수영장을 1일 입장 이용 시 별표 1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용료를 감액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을 중복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1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 등의 적용례) 제1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사용허가신청 또는 이용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별표 1】

1) 시설이용료(수영장·헬스장)

(단위 : 원)

구분		성인 (19세이상)			중.고생 (13~18세)			유아,초등 (12세 이하)			아쿠아로빅 (전체연령)		1일 이용 요금		
수영장	이용 요금 (월)	주5회	주3회	주2회	주5회	주3회	주2회	주5회	주3회	주2회	주3회	주2회	성인	중·고생	유아 초등
		77,000	54,000	39,000	69,000	50,000	39,000	64,000	46,000	33,000	54,000	39,000	3,200	2,200	1,600
헬스장	이용 요금 (월)	50,000											5,000		
사물함	이용 요금	1개월(2,000원) / 3개월(5,000원)													
비고		1. 부가가치세액(10%) 포함 2. 동일 단체 소속 수영장 1일 이용 할인율 : 30인 이상 10% / 100인 이상 20% 3. 아래 기재 시설 운영시간에 중감이 있을 경우 그 중감 정도에 비례하여 시설이용료 중감 가능 4. 이용요금은 이용 시작일 기준으로 나이를 구분함													

※ 시설 운영시간

구 분	평일(월~금)	토요일	공휴일	일요일
수 영	06:00~22:00	06:00~18:00	09:00~18:00	전관휴관
헬 스	06:00~22:00	06:00~18:00	09:00~18:00	
※ 시설 운영시간 및 휴관일 등은 여성문화복지센터 내부규정으로 조정할 수 있다.				

2) 문화강좌 프로그램 수강료

구분	이용료	비고
문화강좌 이용료	100,000원 이하	·주1회 한달 기준
기타	·프로그램별 기준액은 별도로 정함. ·위 기재 시설 운영시간 중감에 따라 수강시간 중감이 있을 경우 그 중감정도에 비례하여 수강료(문화강좌 이용료) 중감 가능. ·교재 및 재료비 별도	

3) 시설사용료

가. 대관료

(단위 : 원)

구분	기준	사 용 료	비 고
강 당	오 전	30,000	
	오 후	50,000	
	야 간	70,000	

※주 1)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2) 사용시간 구분

가. 오전 - 09:00 ~ 12:00

나. 오후 - 13:00 ~ 17:00

다. 야간 - 18:00 ~ 22:00

라. 1일 - 09:00 ~ 22:00

3) 토요일, 공휴일에 사용하는 일반인에 대하여는 해당 기준 사용료의 50%를 가산함.

4)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 행사준비를 위한 사용시는 해당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5) 초과 시 사용료 가산 : 매시간 초과마다 사용료의 30%를 가산함.

6) 익일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심야시간(22:00~익일08:00)의 시설사용은 “야간 요금에 50%를 가산한 금액”을 적용함(3,4,5항 적용하지 않음)

나. 부속시설 사용료

(단위 : 원)

설 비 명		기준	사용료	비고
피아노		1회	30,000	
무대조명		1회	25,000	
음향	빔프로젝트	1회	20,000	
	유선마이크	1회	개당 5,000	
	무선마이크	1회	개당 10,000	
	CD 플레이어	1회	10,000	
무대시설	보면대	1회	10,000	
	의자	1회	10,000	
냉·난방		1회	80,000	

※ 주 1)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2) 연습을 위한 사용은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피아노 조율비용은 사용자가 부담)

3) 소모품(건전지, CD, DVD, 테이프 등)은 사용자 부담으로 함.

4) 보면대 및 의자는 10개 이상 사용 시 부과함.

【별표 3】

이용료의 감면(제12조제3항 관련)

구 분	감면율 (할인율)	비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배우자	50%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5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50%	
「대구광역시 달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	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50%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50%	
「아동복지법」에 따른 소년소녀가정	50%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50%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중 2자녀 가정이면서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가 월 회원으로 수영장이나 헬스장을 이용하는 경우	30%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중 3자녀 이상 가정이면서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가 월 회원으로 수영장이나 헬스장을 이용하는 경우	50%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월 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50%이내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제12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 및 부속설비 등의 사용료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용 시기 및 상황에 따른 시설 및 그 부속설비 등의 사용 효율성의 증대 등을 위하여 그 사용료를 별표 1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1조제1항의 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수영장, 헬스장에 한하여 별표3의 구분에 따라 이용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할 때 수영장 이용료 및 헬스장 이용료를 별표 3의 구분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항목에 대하여 중복적용을 아니하며 감면율이 큰 항목을 적용한다.
1. ~ 10. (생략)	1. ~ 10. (삭제)
④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면제 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 또는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전항들에 따라 시설 및 그 부속설비 등의 사용료나 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액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용허가나 이용을 신청하는 때 사용료나 이용료의 면제 또는 감액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 또는 제시하여야 한다.
⑤ 수영장 1일 입장 이용시 동일 단체 소속 30명 이상의 이용자에 대해서는 단체감면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을 중복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동일 단체 소속 30명 이상의 이용자가 함께 수영장을 1일 입장 이용시 별표 1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용료를 감액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을 중복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1】						【별표 1】																			
1) 시설이용료(수영장·헬스장) (단위:원)						1) 시설이용료(수영장·헬스장) (단위:원)																			
구분		성인 (만19세이상)	중.고생 (만13~만18세)	유아,초등 (만2세 이하)	아쿠아 로빅	1일 입장 요금	구분		성인 (19세이상)	중.고생 (13~18세)	유아,초등 (12세 이하)	아쿠아 로빅 (전체연령)	1일 이용 요금												
수영 장	이용 요금	생략																							
헬스 장	이용 요금	50,000																							
사물 함	이용 요금	1개월(2,000원) / 3개월(5,000원)																							
비고		1. 부가가치세액(10%) 포함 2. 동일 단체 소속 1일입장 할인율 : 30인 이상 10% / 100인 이상 20%																							
※ 장기등록(3개월 이상) 이용회원에 대하여는 여성문화복지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운영시간에 증감이 있을 경우 이용료는 기준액에 비례하여 증감할 수 있음.																									
※ 생략																									
2) 문화강좌 프로그램 수강료						2) 문화강좌 프로그램 수강료																			
구분		이용료				비고		구분		이용료				비고											
문화강좌 이용료		100,000원 이하				·주1회 한달 기준		문화강좌 이용료		100,000원 이하				·주1회 한달 기준											
기타		·프로그램별 기준액은 별도로 정함. ·운영시간에 증감이 있을 경우 수강료는 기준액에 비례하여 증감할 수 있음. ·교재 및 재료비 별도											기타		·프로그램별 기준액은 별도로 정함. ·위 기재 시설 운영시간 증감에 따라 수강시간 증감이 있을 경우 그 증감정도에 비례하여 수강료(문화강좌 이용료) 증감 가능. ·교재 및 재료비 별도										
3) 시설사용료 가. 대 관 료						3) 시설사용료 가. 대 관 료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강 당		오 전		30,000				강 당		오 전		30,000													
		오 후		50,000						오 후		50,000													
		야 간		70,000						야 간		70,000													
※ 주 1) ~ 5) 생략													※ 주 1)~5) 현행과 같음												
													6) 익일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심야시간(22:00~익일08:00)의 시설사용은 “야간 요금에 50%를 가산한 금액”을 적용함(3,4,5항 적용하지 않음)												
나. 생략						나.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3】			【별표 3】		
이용료 등의 감면(제12조 관련)			이용료의 감면(제12조제3항 관련)		
구분	감면율 (할인율)	비고	구분	감면율 (할인율)	비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0%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배우자	5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배우자	50%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5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5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5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50%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50%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50%	
「아동복지법」에 따른 소년소녀가정	50%		「아동복지법」에 따른 소년소녀가정	50%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50%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50%	
다자녀 가정(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미성년자 1인 이상 포함된 3자녀 이상 가정)	50%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중 2자녀 가정이면서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가 월 회원으로 수영장이나 헬스장을 이용하는 경우	30%	신설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월 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중 3자녀 이상 가정이면서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가 월 회원으로 수영장이나 헬스장을 이용하는 경우	50%	변경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50% 이내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월 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50% 이내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지원내용)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학준비금의 지급
2.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21조에 따른 일반용봉투(이하 “일반용봉투”라 한다)의 무료 제공
3. 사용료 등의 감면
4. 그 밖에 다자녀가정의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대구광역시 달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로부터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병무청훈령 제1564호, 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운영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적용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예우,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홍보 및 예우) 군수는 병역명문가가 주민의 모범이 되고 존경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적극 홍보하고, 예우에 대한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지원) 군수는 제5조의 시책에 따라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우대) ① 군수는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이 군에서 설치하여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있는 시설물 등을 이용하고자 할 때 그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입장료·주차료·수강료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시설물 등 관련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1. 비용발생 관련 사항

- 내 용 : [별표 3] 이용료의 감면(제12조제3항 관련)
- 주요내용 :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따라
사용료 감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로 자녀 2명이상 가정 지원(신설)
 - 대구광역시 달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
명문가 예우대상(신설)

<이용료 감면 개요>

- 근 거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 감면대상 : 월 회원으로 수영장, 헬스장 사용하는 다자녀가정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 감 면 율 : 가. 다자녀가정 중 2자녀 가정 ⇨ 30%(신설)
나. 다자녀가정 중 3자녀 가정이상 ⇨ 50%(변경)
다. 병역명문가 예우대상 ⇨ 50%(신설)

2. 미첨부 사유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제2호
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
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해당 조례 재정건은 비예산사업임)
- 여성문화복지센터의 수영장, 헬스장을 사용하는 월 회원 중 다자
녀가정의 등록 회원수 및 지역내의 다자녀가정의 수가 유동적이
라 파악의 어려움.

3. 작성자 : 복지정책과 여성가족팀장 송재순